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4
----------	------------

2021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정관으로 정해야 할 이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바, 안 제16조의3제1항과 같이 협의회 설립의 허가 및 사무의 검사, 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인 시장이 대외적으로 법인(협의회)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회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의 실효적인 구현을 위해 협의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공무원(예: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인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것은 가능함.

- 안 제16조의3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협의회 부회장 선임과 회원의 위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의 세부사항은 자치자치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법인인 협의회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안 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는 자치구 관광협의회가 협의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초 협의회는 광역 협의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초 협의회는 광역 협의회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됨을 예상하고 있으나,

구 협의회 위상과 역할을 시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2. 수정 주요골자

-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함(안 제16조의3제1항).
- 부회장 선임 및 회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임원과 회원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함(안 제16조의4).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3 제1항 중 “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를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6조의3 제2항에서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의3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 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p>③ 시장은 협의회와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u><신 설></u>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p> <p>② 부회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중에 호선한다.</p> <p>③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단위 기관단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업무 관련 단체, 관광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p> <p>④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③ ~ ④ <u><삭 제></u></p>
<u><신 설></u>	<p>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p> <p>① 자치구 관광협의회는 협의회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 자치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의회 분사무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p> <p>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 분사무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

- 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p>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u>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신 설></u></p>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p> <p>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